

# 화기엄금

## 제4류 위험물 - 인화성액체

품목	품명	취급 최대용량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		ℓ

특수인화물, 제1석유류,  
알코올류, 제2석유류,  
제3석유류, 제4석유류 순서로 기재  
(해당 없으면 기재 안함)

관리책임자

정		부	
	(연락처)		(연락처)

- 1. 품목 및 품명 기재**
  - \* 품목 : 특수인화물, 제1석유류, 알코올류, 제2석유류, 제3석유류, 제4석유류 순서로 기재(해당 없으면 기재 안함)
  - \* MSDS 15번 법적규제현황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참고 - 품목 및 품명 기재, 붙임 참조
- 2. 취급 최대용량 기재**
  - \* 품명별로 보관 용기의 총 용량 기재
  - \* 총 용량은 잔량이 아닌 용기의 용량임
  - \* 빈 용기의 용량도 포함되므로 보관금지(즉시 폐기 처분)
- 3. 양식 변경 가능**
  - \* 품명이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(1장 이내)
  - \* 해당 품목 및 품명에 맞게 수정, 작성 완료 후 공란은 "이하여백" 기재
- 4. 관리책임자 정, 부 기재**
  - \* 관리책임 정, 부 성명 및 비상연락처 기재
- 5. 부착방법 ("가" 또는 "나" 선택하여 부착)**
  - \* "A4" 1장으로 컬러 출력
  - 가. 약품 종류 및 양 변동이 많은 경우(상시 수정 필요시)
    - 코팅하여 유성펜으로 기재하여 부착
  - 나. 약품 종류 및 양이 일정한 경우("㉠" 또는 "㉡" 선택)
    - ㉠ 한글문서 작업 후 출력/코팅하여 부착
    - ㉡ 한글문서 작업 후 출력하여 아크릴꽃이판에 넣어 부착

# 화기엄금

## 제4류 위험물 - 인화성액체

품목	품명	취급 최대용량
특수인화물	디에틸에테르	1 ℓ
제1석유류	아세톤	18 ℓ
	벤젠	1 ℓ
	톨루엔	1 ℓ
	초산메틸	4 ℓ
	에탄올	18 ℓ
알코올류	메탄올	4 ℓ
	이소프로판올	4 ℓ
	이하 여백	

관리책임자

정	OOO	부	OOO
	연락처) 000-0000-0000		연락처) 000-0000-0000

# 화기엄금

## 제4류 위험물 - 인화성액체

품목	품명	취급 최대용량
제1석유류	휘발유	18 ℓ
알코올류	에탄올	4 ℓ
	메탄올	4 ℓ
제2석유류	등유	18 ℓ
	이하 여백	

관리책임자

정	OOO	부	OOO
	연락처) 010-0000-0000		연락처) 010-0000-0000

작성 후 이하여백 기재

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15. 법적 규제현황

2. 유해성·위험성

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인화성 액체 : 구분2
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: 구분2
-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: 구분2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구분1B
- 발암성 : 구분1A
- 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 : 구분1
- 흡인 유해성 : 구분1
-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: 구분2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측정주기 : 6개월)
- 관리대상유해물질
-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(진단주기 : 6개월)
- 특별관리물질
-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물질
- 노출기준설정물질
- 허용기준설정물질

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

나.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유독물질
- 사고대비물질

· 그림문자

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4류 제1석유류(비수용성) (200L)

· 신호어

위험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지정폐기물

· 유해·위험문구

- H225 :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
- H304 :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
- H315 :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H319 :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- H340 :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
- H350 : 암을 일으킬 수 있음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· 국내규제

- 기타 국내 규제
- 해당없음

품목 품명 ↓

4류 제1석유류(비수용성)